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 6월 20일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5월 29일, 도병두의원, 이인식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5년 6월 20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과 경찰서 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범죄예방과 신속한 대응 및 지역 특성과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와 구민 안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사업(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박병규

나.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¹⁾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과 경찰서 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범죄예방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와 국민 안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동 제정안은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될 내용에 대하여
 - 안 제6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사업 내용에 대하여
 - 안 제7조에서는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자치경찰제는 1990년대 행정개혁과 함께 중앙정부 중심의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려는 움직임과 치안서비스의 지역 맞춤형 전환 요구,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에 따라 논의되기 시작함.
- 2003년 제주도에서 시범 도입되었고, 2018년 정부가 전면 도입을 추진하면서 2020년 12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

1)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현재 경찰사무는 자치경찰사무, 국가경찰사무, 수사 사무로 나뉘며,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 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여 경찰권을 분산하고 있음.

로 시행됨. 현재는 국가경찰 인력을 활용하되,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함.

- 참고로 전남 완도군을 시작으로 84개 기초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고 서울시 자치구는 제정 검토 중에 있음.
- 본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